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하남시장(민원여권과)

제출일 : 2026. 7.

1. 제안이유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민원서식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조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법령 관련 내용 명시

- 1) 민원서식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명시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관련 규정을 명시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필요 문구 병기

나. 별지로 규정된 민원 서식을 큰글자 서식으로 변경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삽입

- 1)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 제1조)
- 2) 하남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안 제2

조)

- 3)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안 제3조)
- 4) 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 5)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5조)

조)

- 6)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유정수)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민원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민원 서식을 정비하여 법령에 따른 행정정보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임.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민원서식을 현행화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